

화장지

I 사례 개요

- 사 례 번 호: NY N358225 (2026.02.19.)
- 쟁 점 사 항: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
- 최종 수출국: 중국
- 최종 원산지: 인도네시아



II 사실관계

용도	• 화장실용 위생 용지		
재료		인도네시아	• 원지
		중국	• 지관
Sourcing 및 공정 흐름도	Sourcing ▾  인도네시아  화장지 원지 생산 → Manufacturing ▾  중국  TOILET PAPER STEP 1 원지 수입 STEP 2 종이 풀기 및 엠보싱 처리 STEP 3 지관에 감은 후 절단 STEP 4 품질검사 및 포장 → Export ▾  중국 최종 수출		
	상세 공정		인도네시아
		중국	• 롤에서 원지를 풀고 엠보싱 처리 • 지관에 감은 후 규격에 맞게 절단 • 품질검사 및 포장

III 판정 결과

《CBP의 판정》

- ⊙ 원지를 단순히 엠보싱 처리하고 절단하는 등의 공정은 인도네시아산 원지를 새로운 명칭, 특성 및 용도를 가진 상이한 물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, 이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원지가 생산된 인도네시아임

→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

Ⅳ 시사점

- ⊙ 원지를 단순히 엠보싱 처리하거나 절단, 접기, 재권취, 포장하는 등의 공정은 원지의 본질적 특성과 예정된 용도를 변형시키지 않는 단순 마무리 공정에 해당하여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받기 어려움
- ⊙ 다만, 이러한 원지를 단순히 절단하거나 접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구조와 독립된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수 있음

CBP의 참고 판정 사례

물품명	종이 접시
사례번호	NY N348329 (2025.05.15.)
쟁점사항	원산지 판정
사실관계	• [중국] - 원재료를 가공하여 원지 생산 - 대형 롤에 감음 • [대만] - 원지를 금형 절단 - 무늬 인쇄 - 접시 모양으로 성형 - 포장
판정 결과	• 대만에서 종이가 금형 절단되어 형태를 갖추고, 인쇄되며, 접시 형태로 성형되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, 해당 종이 접시의 원산지는 대만임

유의사항: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(원재료, 제조공정 등)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